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13
----------	------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가. 종합유통단지 조성 시설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심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6조의2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나. 또한,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부합하게 종합유통단지 조성 시설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안 제3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규정 삭제(안 제8조)
- 다.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를 “종합유통단지”라 하고, “조성과 분양에 관하여”를 “조성과 분양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지”란 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
3.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이란 분양계약 시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1. 무역센터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그 밖의 시설

제4조의 제목 “(유치업종등)”을 “(유치업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단지안”을 “단지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융자등”을 “재정융자 등”으로, “하되”를 “하되,”로, “필요시 용지매입등에”를 “필요 시 용지매입 등에”로, “범위안에서 시비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편의등”을 “편의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분양절차등”을 “분양절차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담케”를 “부담하게”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특별회계”를 “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확정측량등”을 “그 밖의 확정측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획기간내”를 “계획기간 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타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기타 법령의 규정”을 “그 밖의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u>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u>의 <u>조성과 분양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조성사업</u>”이라 함은 <u>단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u>을 말한다.</p> <p>2. “<u>분양지</u>”라 함은 <u>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u>를 말한다.</p> <p>3. <u>업무편의시설로 분양받은 시설</u>이라 함은 <u>분양계약시 업무편의 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u></p>	<p><u>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종합유통단지</u>----- ---<u>조성과 분양에</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조성사업</u>”이란 <u>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조성</u>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p> <p>2. “<u>분양지</u>”란 <u>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u>를 말한다.</p> <p>3. “<u>업무편의시설로 분양받은 시설</u>”이란 <u>분양계약시 업무편의 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u></p>

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 (생략)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건립위치 및 용지배분면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0조의 유통업무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1. 무역센터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기타시설

제4조(유치업종등) 단지안의 유치업종·입주업태·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비) 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1. 무역센터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그 밖의 시설

제4조(유치업종 등) 단지 안-----

- . <후단 삭제>

제7조(조성사업비) ①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용자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용지매입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종합유통단지 입주자부담금, 시비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단지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사업추진조직) 시장은 단지조

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

② -----
재정용자 등----- 하
되, -----
필요 시 용지 매입 등에-----

-----범위
에서-----.

<삭 제>

<삭 제>

제11조(분양가격) -----

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
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
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
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
양절차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
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
케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는 분양계약금은 제8조의 특별회
계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
에 대하여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 ① 조성사
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
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기타 확정측량등에 의한 분양

- 편의 등 -----
-----.

제12조(분양공고) -----
----- 분양절차
등-----.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

----- 부담하게 -----

----- 않을 -----
-----.

② -----
----- 시-----

-----.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 ① -----
-----정산하여야 하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의 확정측량 등-----

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
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소유권의 이전) ① (생략)

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비
용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 ① 용지
를 분양받은 자가 용지(시설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우편기계물류 및 지원시설(전
화국, 변전소, 경찰·119안전센
터, 업무편의시설로 분양받은 시
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양도(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
의 사업계획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②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
은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제16조(소유권의 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모든 -----

--.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 ① -----

-----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

----- . -----

----- 그렇
지 않다.

1. ~ 4. (현행과 같음)
5. ----- 받으려는 -----

6. 그 밖에 -----

② -----
--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

에는 당해 용지의 일정 면적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직접 사용 면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19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기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현행과 같음)
2. ----- 계획기간 내 -----

제19조(다른 법령의 적용) -----
-----않은-----
----- 그 밖의 법령-----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삭제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7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4.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96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89조부터 제90조의2까지,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삭제 및 특별회계 폐지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경제국 민생경제과장 최 재 원